

영등포구의회
제200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김 용 범 의원 대표발의】



2017. 5. 16.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崔 光 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06호로 2017년 5월 11일 김용범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5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결산·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재정법」에서 분리하는 내용으로 「지방회계법」이 제정(2016.5.29.)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 시행(2016.11.30.)됨에 따라, 근거 상위 법령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회계법 시행령」 시행('16.11.30.)에 따라 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근거법 개정 (안 제2조)

나. 예비비로 사용 금액 명세서 의회 제출기일 개정 (안 제3조 제1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회계법」, 「지방회계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결산·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재정법」에서 분리하는 내용으로 「지방회계법」이 제정(2016.5.29.)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 시행(2016.11.30.)됨에 따라, 근거 상위법령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 안 제2조는 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에 대한 근거법규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 안 제3조제1항에서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기한을 “다음회계년도 5월 10일에서 다음회계년도 5월31”로 개정하는 것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지방회계법

제14조(결산의 수행)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회에게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감사위원의 실명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의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산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산업무의 기준·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전
단에 따른 감사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의 감사의견서를 첨
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와 감사의견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감사의견서와 감사위원의 성명을 지
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